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52868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7. 3. 10.

판결 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26,399원 및 그 중 1,034,498,836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6. 5. 26.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B과 피고 C, D 사이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에게,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64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2009. 5.경 한도금액을 15억 원, 한도거래기간을 2009. 4. 30.부터 2011. 4.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한도거래용)을 체결하고(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보증인을 피고 회사,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11. 12.까지(그 후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5.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가 2009. 11. 13. 발급되었다.), 2010. 11. 8. 신용보증원금을 7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0. 11. 8.부터 2011. 11. 17.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6억 4,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6. 5.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3. 2. 20. 신용보증원금을 1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2. 19.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1억 4,4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6. 2. 1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대위변제일부부터의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로부터 2009. 11. 13. 3억 원, 2010. 11. 12. 8억 원, 2013. 2. 21.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2. 5. 다른 금융기관채무 등에 대한 연체사실이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었고 같은 달 16. 원금 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6. 3. 24. 위 은행에 1,037,296,881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2,798,045원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1,500,137원이고, 위약금은 326,660원이며, 대위변제금 중 2,798,045원을 회수하여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766원이고, 2016. 3. 24.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C에게 6,000만 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피고 D에게 6,0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각 2015. 9. 24.자로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9. 30. 접수 제64058호로, 피고 D에게 위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405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26,399원{= 대위변제금 잔액 1,034,498,836원(=대위변제금 1,037,296,881원 - 회수금 2,798,045원) + 채권보전비용 1,500,137원 + 위약금 326,660원 + 확정 지연손해금 766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1,034,498,836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6.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5. 26.까지 약정에 의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제2항 기재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6. 3. 24. 대위변제를 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바,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인 2015. 9. 24. 무렵 피고 B은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아산시 E 토지 등 시가 합계 약 1,234,420,6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1,036,326,399원의 구상금 채무, 하나은행에 대한 보증 및 대출금 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하나카드에 대한 카드론 채무 등 합계 약 2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일련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B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다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피고들은 각 자신들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 D의 딸 F(위 F과 피고 B의 딸 G은 같은 지역에서 대학교를 함께 다녀 아는 사이이다.)을 통해 우연히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② 이에 피고들은 피고 B과 만나 2015. 7. 22.경 분할되기 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들이 의도한 주택 건축이 가능할 것을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한다는 뜻으로 '허가 조건부 허가부결시(주택) 계약금 일체 반환'이란 특약사항이 기재된 사실, ③ 피고들은 2015. 8. 21. 아산시로부터 각 '건축신고(신축) 필증'을 교부받자, 같은 날 피고 C은 4,800만 원, 피고 D은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각 지급한 사실, ④ 이후 피고들은 분할 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로 비슷한 면적인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치고

2015. 9. 24. 피고들에게 각자의 몫으로 분할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바와 같은 각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자신의 몫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⑥ 그 후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⑦ 피고 C은 자신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피고 D은 자신의 남편이 대출받은 돈과 자신의 딸이 빌려준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자금을 마련한 사실, ⑧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각 부동산의 시가에 부합하게 정해졌고, 위 계약체결 이전 피고 B와 피고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B와 피고들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가 아니었다거나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약 1달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 등¹⁾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윤상도

판사김영환

판사강민수

별지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일부 이례적으로 진행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

해명되었고, 특히 만약 피고들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오히려 매매잔금의 지급과 동시 또는 직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불안을 해소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